



알기쉬운 화학제품안전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알 켄 송 현 (주)

REACH Chem Song Hyun
Chemical Consulting Services

www.rcsh.co.kr

목차

I.	살생물제란 무엇인가요?	04
II.	살생물물질을 제조·수입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05
III.	기존살생물물질의 신고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06
IV.	살생물물질을 승인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07
V.	살생물제품의 승인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08
VI.	살생물제품의 승인신청시 제출서류는?	09
VII.	살생물처리제품의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10
VIII.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이란?	11
IX.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 제품을 제조·수입하려면?	12

I. 살생물제란 무엇인가요?

살생물제는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 제품**으로 분류됩니다!

살생물물질 유해생물을 제거·무해화·억제 하는 기능으로 사용하는 **화학물질**, **천연물질**, **미생물**
 예시 : PHMG, PGH, CMIT/MIT, 라벤더오일 등

살생물제품 유해생물의 제거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품**
 예시 : 소독제, 방충제, 살충제, 방부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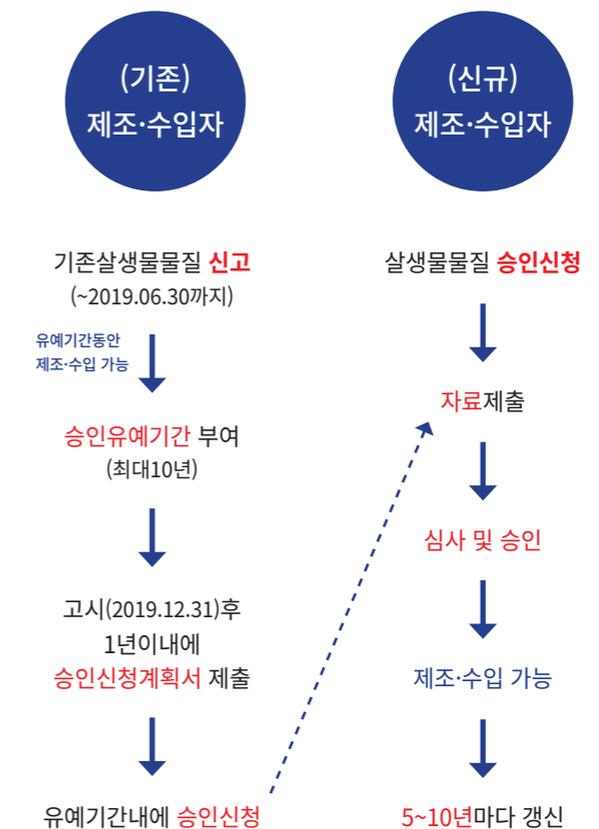
살생물처리제품 제품의 주된목적이 아닌 유해생물제거 등의 **부수적인 목적을 위해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제품**
 예시 : 향균에어컨필터, 탈취양말, 향균속옷 등



II. 살생물물질을 제조·수입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먼저, 신고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순서는 아래 흐름도를 확인하세요

대상 : 살생물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자



III. 기존살생물물질의 신고방법 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하세요!

화학제품관리시스템 : <http://chemp.me.go.kr>



기업등록, 회원가입 후 '기존살생물물질 신고' 가능

신고시 제출자료는 어떤 것이 있나요?

기존살생물물질 신고 제출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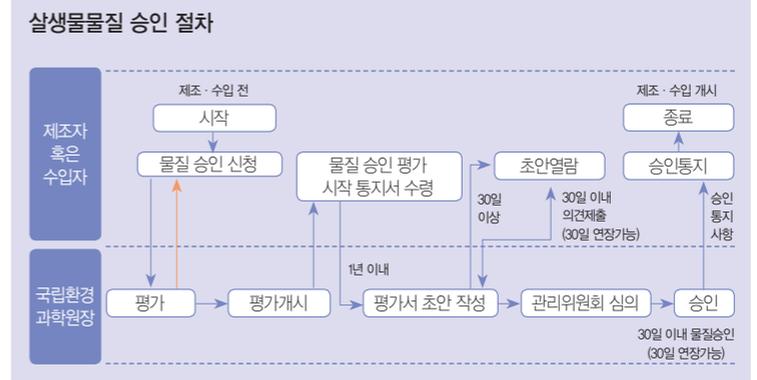
- 기존살생물물질 제조·수입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 제조 또는 수입자의 성명, 상호, 주소, 연락처
 - 기존살생물물질의 명칭
 - 물질의 화학적 조성
 - 제조(수입)량
 - 기존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 기존살생물물질의 상세용도
- 기존살생물물질의 국내의 사용 및 규제정보



신고 후에는 승인이 필요합니다!

IV. 살생물물질을 승인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서
승인신청 가능합니다.



승인신청시 제출자료는 어떤 것이 있나요?

살생물물질 승인 제출서류

- 살생물물질 승인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신청인 일반정보
 - 신청정보(살생물물질명, 살생물제품유형 등)
- 살생물물질의 화학적 조성 등 식별정보 (분자식, 화학적 조성 등)
- 살생물물질에 관한 자료
 - 물리·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
 - 용도, 주요 노출경로, 노출형태 등 노출정보
 - 인체·동물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위해성 정보
 - 효과·효능
 - 분류 및 표시
 - 취급상 주의사항 및 폐기방법
 - 국내의 사용 및 규제정보
- 살생물물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 공정
- 살생물물질의 안전성에 관한 종합 자료(위해성 평가 포함)
- 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 제품의 사용 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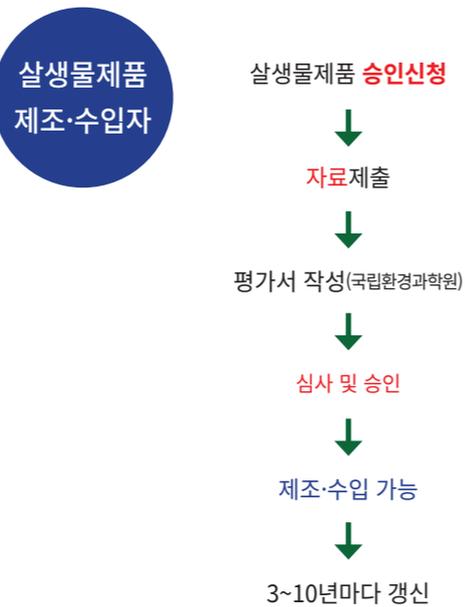


화평법 물질등록보다 더 많은 자료 필요
더 많은 소요시간 필요

V. 살생물제품의 승인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승인받은 살생물물질이 포함된 살생물제품만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 : 살생물제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



살생물제품 승인 기준 완화대상 살생물제품

1. 제품승인 대상 살생물제품이 산업용으로만 사용될 것
2. 제품승인 대상 살생물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위해성이 낮은 제품이 없어 해당 살생물제품의 사용이 국민의 건강 및 환경에 필요한 경우

VI. 살생물제품의 승인신청시 제출서류는?

살생물제품 승인 제출서류

-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 신청인 일반정보
 - 신청정보 (제품명, 제형, 표준사용량, 유효기한 등)
-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물질에 관한 자료
 -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을 포함한 모든 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사용목적 및 용도
 -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의 공급자명 및 주소
 - 제품에 함유된 나노물질의 명칭, 사용목적 및 용도 (나노물질을 의도적으로 함유한 경우만 해당)
- 살생물제품에 관한 자료
 - 물리·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
 - 살생물제품의 용도, 주요 노출경로, 노출 형태 등 노출정보
 - 인체·동물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위해성 정보
 - 효과·효능
 - 분류·표시 및 포장
 - 사용상 주의사항 및 폐기방법
 - 국내외 사용 및 규제정보
- 살생물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 공정
- 기준에 적합한 안전용기 또는 포장의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제조·보관시설의 설치·운영 계획 또는 현황
- 살생물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종합 자료



VII. 살생물처리제품의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대상 :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수입하려는자



안전기준

-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제품이 제품승인을 받은 것으로 해당 제품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사용될 것
- 살생물처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제품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과 유사성 기준을 충족하는 살생물 제품이 사용된 것
 -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모든 살생물물질이 승인받은 살생물물질로서 승인된 살생물 제품 유형으로 사용되거나, 위해성이 낮아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살생물물질인 경우
 - 외국 정부를 통해 안정성이 인정되었을 것

표시기준

- 유해성을 제거 등에 대한 효과·효능을 구매자에게 알리려는 경우 제품겉면에 알아보기 쉽게 표시
 - 살생물제품이 사용되었음을 알리는 문구
 - 사용된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모든 살생물물질의 명칭 및 기능
 - 사용된 살생물제품에 나노물질이 의도적으로 함유된 경우 그 함유 사실 표기
 - 사용된 살생물제품의 위험성 및 취급 시 주의사항

VIII.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이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생활화학제품 중에 특별히 사람에게 **위험**하다고 지정된 제품입니다.

- 화학물질의 위해성 등에 관한 안전기준·표시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제품 35종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35개 품목)

분류	품목
세정제품	세정제, 제거제
세탁제품	세탁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품	광택코팅제, 특수목적코팅제, 녹방지제, 다림질보조제
접착·접합제품	접착제, 접합제
방향·탈취제품	방향제, 탈취제
염색·도색제품	물체염색제, 물체도색제
자동차전용제품	자동차용워셔액, 자동차용부동액
인쇄/문서관련제품	인쇄용 인쇄·토너
미용제품	미용접착제, 문신용염료
살균제품	살균제, 살조제, 가습기용향균·소독제제, 감염예방방용 살균·소독제제, 기타방역용 소독제제
구제제품	기피제, 보건용기피제, 보건용 구제·방지·유인살충제, 감염예방방용살충제, 감염예방방용살서제
보존·보존처리제품	목재용방부제,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기타	초, 습기제거제, 인공눈스프레이



*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IX.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려면?

해당 제품이 “신고” 대상인지, “승인” 대상인지 파악하기

확인 및 신고대상

승인대상제품을 제외한 모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대상

- 가습기용 향균·소독제제
-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제
- 기타 방역용 소독제제
- 보건용 구제방지 유인살충제
- 보건용 기피제
- 감염병 예방용 살충제
- 감염병 예방용 살서제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란?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더불어 식약처에서 관리 주체가 환경부로 이관된 제품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신고” 대상 제품일 경우

① 안전기준적합확인을 받은 후

② 30일 이내에 신고!

Where? →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 신청!

Where?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고!

화학제품관리시스템 <http://chemp.me.go.kr>

안전기준 적합확인 제출서류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제품의 사진 및 설명서 등의 제품정보에 관한 서류
-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및 용도에 관한 서류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사본(갱신 시)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 확인을 받은날로부터 3년
- 유효기간 경과 전 재확인(필요시)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 시 제출서류

-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사본
- 제품의 사진 및 설명서 등의 제품정보에 관한 서류
- 제품에 함유된 모든 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및 용도에 관한 서류
- 법 제10조제6항¹⁾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한 표시건본

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시키려는 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겉면 또는 포장에 한글로 표시해야 함



“승인” 대상 제품일 경우

① 제출자료와 함께 승인 신청!

Where? →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

화학제품관리시스템 <http://chemp.me.go.kr>

② 90일 이내에 승인통지 받고 제조·수입 시작!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을 위한 제출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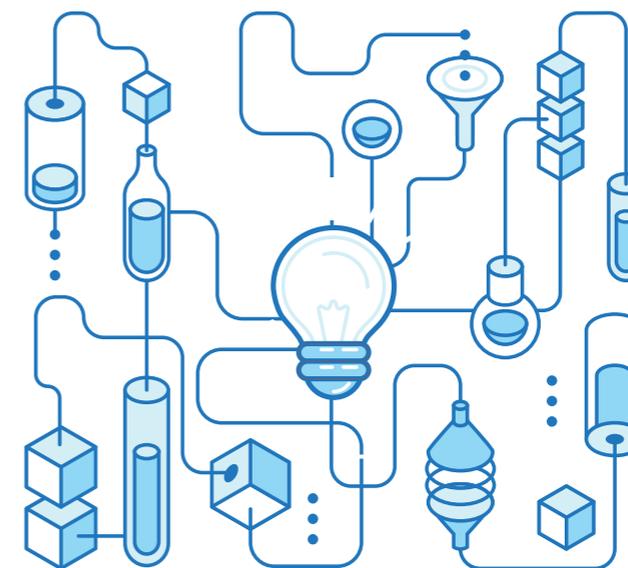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 신청인 일반정보
 - 신청제품정보(제품명, 품목, 제형 등)
- 제품의 주된 기능을 하는 화학물질에 관한 자료
 - 화학물질의 식별정보: 명칭, 분자식·구조식 등
 - 화학물질의 용도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 화학물질의 유해성
 - 화학물질의 노출경로, 노출형태 등 노출정보를 포함한 위험성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관한 자료
 - 효과·효능
 - 해당 제품의 유해성
 - 해당 제품의 성분 분석에 관한 시험·검사의 기준 및 방법
 - 안전한 사용에 관한 자료(해당 제품의 안전성, 폭발·화재·누출 시 응급조치사항 및 보호구 등)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완료 발급서류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

※ 승인대상 제품 중 살생물제에 속하는 제품은 살생물제 규제도 함께 준수해야 합니다!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길 44-7
한솔빌딩 201호(홍대입구역2번출구)

02-3144-0973, 0974
www.rcsh.co.kr